

하남시 고시 제2021-99호

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1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:미사촌지구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하남시 도시계획과(도시계획팀 ☎031-790-6372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,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(<http://eum.go.kr>)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.

2021. 8. 2.
하 남 시 장

-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및 사유서 : 변경사항에 한함
- 기타 사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도면번호	위치	계획내용	비고
-	미사동 235번지 일원	· 대체통로 확보에 따른 보차혼용통로 폐지	미사촌지구

